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2407

2018년 4월 10일
교 육 위 원 회

Ⅰ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년 3월 5일, 김혜련 의원

2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7일

3. 상정일자

○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18년 4월 10일 상정·원안가결)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혜련 의원)

1. 제안이유

○ 현재 우리사회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교육감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8조제2항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○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5일 김혜련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07호로 발의되어 2018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
○ 동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○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교원중심의 다문화교육 연수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존중,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통과 유대감 형성 등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.

○ 이와 관련해서 현행 「다문화가족법」 제5조제1항에서는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고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“교육부장관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입법적 조치라 하겠는바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(민주시민교육과-3344, 2018.3.29)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Ⅴ. 토론요지 : 생략.

Ⅵ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Ⅶ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교원연수)”를 “(교원연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교원연수) (생 략) <신 설>	제8조(교원연수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